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한계 및 판단기준을 명확히 한 최근 2건의 윤촌 수행 무죄 사례

윤촌이 수행한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들에 대하여, 법원은 최근 연이어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윤촌은 2026. 1. 28. 아스콘 포장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협착 사고와 관련하여 건설회사와 그 대표이사, 현장소장을 변호하여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등에 관한 전부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6. 1. 28. 선고 2024고단234 판결, 이하 “제1대상판결”). 또한 윤촌은 2026. 1. 9. 리조트 시설 안에 있는 호수 내 전기시설에서 발생한 감전 사고와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시설회사와 대표이사 및 시설소장에 대하여도 전부 무죄 판결을 도출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6. 1. 9. 선고 2024고단268 판결, 이하 “제2대상판결”).

위 대상판결들은 안전조치의무 및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준별하여 각 규정에 따른 의무의 취지 및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지배, 운영, 관리의 가능성 및 사고에 대한 상당인과관계 내지 예견가능성에 관하여 면밀히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의무이행을 하였다면, 단순히 서류상의 조치가 일부 미흡하다고 하여 중대산업재해의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는 취지의 법리를 설시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 업무의 관점에서 현장의 구체적인 안전조치 내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I. 제1대상판결의 쟁점

1. 사건의 경위 및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은 원청 A사-하청 B사-장비업체C사의 계약구조하에서, C사 소속 재해자(포장공)가 자신의 작업을 완료하고 철수한 상태에서 타이어롤러만이 운행되고 있던 작업 구간에 진입하였다가 위 타이어롤러에 협착되어 사망한 사고입니다. 검사는 원청 A사 및 그 관계수급인인 B사 소속 피고인들이 ① 후방카메라 설치 및 ② 장비 전담 유도 내용에 대한 작업계획서 작성, ③ 작업계획서 내용대로 작업하도록 관리, ④ 차량용 건설기계의 협착 위험 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들의 출입금지 또는 장비 전담 유도자 배치 등을 비롯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에 관하여는 ① 위험성평가를 일부 누락하거나 개선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점,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예산이 실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지 아니한 점,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충실히 업무 수행을 위한 평가를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한 점, ④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점, ⑤ 반기 1회 이상 안전보건관계법령의 의무이행 점검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의 조치 미이행 으로 기소되었고, 재해자가 소속된 사업주 C사는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혐의로 각 기소되었습니다.

2. 제1대상판결의 요지

가. 현장소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전부 무죄

법원은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형별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윤리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공소사실의 조치들이 법령상 요구되는 의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전파하여 해당 작업계획서대로 작업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법원은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작업자들에게 작업계획서의 내용이 충분히 전파되어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출입금지 또는 전담으로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 사건 타이어롤러의 작업 구간이 안전보건규칙 제200조에서 정한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위 장소가 협착 위험이 있는 장소라고 평가하더라도, 유도자가 반드시 장비 유도만을 전담으로 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나. 대표이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의 점: 전부 무죄

1)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 등 의무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경영책임자의 위험방지조치의무가 이행되었는지 여부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등의 제도를 구축하고 그러한 체계가 합리적으로 작동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이 상당하고, 의무이행의 일부가 다소 미흡하였다거나 현실적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만으로 설불리 의무위반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위험성평가에 관한 근로자 참여는 평소 의견이나 일상적인 소통 과정에서 수집된 내용으로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2) 안전보건예산 편성 및 집행 의무

법원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집행의 주체가 원청에 해당한다는 법률적 판단을 통해 하청 내지 중간 관계수급인의 지위에 불과한 피고인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평가 의무

법원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를 형식적으로 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피고인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평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다는 변론 취지를 면밀히 심리하여 평가가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4) 안전관리자의 법정 인원 배치 의무

법원은 실제로 법정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 자가 이 사건 현장에서 안전관리자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이 제6호의 의무는 안전관리자를 법정 인원에 맞게 배치하여 산업재해 예방의 업무에 기여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는 점을 충실히 고려한 판단으로서, 단순히 노동청에 대한 형식적인 선임 신고 여부로 형사책임을 인정하면 안 된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 한 것입니다.

5) 공통적인 사정: 상당인과관계 관련 무죄 판단

또한 법원은 이 사건 사고가 이례적으로 발생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보면서, 설령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령이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러한 의무 불이행이 이 사건 사고 발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시하였습니다.

II. 제2대상판결의 쟁점

1. 사건의 경위 및 공소사실의 요지

재해자는 리조트 시설의 호수 내 청소, 화재 점검 등 단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한 시설관리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불상의 이유로 출입이 금지된 이 사건 수변전실의 특고압반 내부로 들어가 감전되어 사망하였습니다.

검사는 시설관리회사의 현장소장에 관하여는, ① 사전에 전로의 특고압 전기를 차단하지 않고, ② 절연용 보호구 및 방염처리 작업복을 착용시키지 않았다는 등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위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하여는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2. 제2대상판결의 요지

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무죄

대상판결은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 외의 다른 가능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위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주에 대하여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할 것까지 예상하여 이러한 사고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일이 이에 대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 것까지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업무상과실치사죄 역시 일반적 보통인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통상 예견 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까지 예견하고 대비할 것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11948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이 단순히 중대재해의 결과발생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재확인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전제 하에 대상판결은, ① 피고인들에게 검사 주장의 안전조치의무 자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② 이 사건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를 면밀히 심리한 끝에 피고인이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던 사고라는 점을 인정하여 시설관리회사 및 그 현장소장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나. 대표이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의 점: 무죄

대상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동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은 위 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구체화되어 있다.”고 판시하고, 위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의 위반과 종사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처벌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대상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는 사업장 내에서 통상적으로 예견되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할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사고 발생 여부가 극히 이례적이거나 위험성평가 과정에서 도출되지 않은 위험 요인까지 사전에 포괄하여 대비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보아 죄형법정주의 및 형사법의 대원칙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견지에서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 영역을 벗어났고, 달리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보는 이상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는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설령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III. 대상판결들의 의의 및 시사점

율촌은 대상판결들을 포함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제1심 공판 사건 기준으로 총 4건의 무죄 판결(상급심 포함시 6건 무죄)을 이끌어냄으로써, 국내 유수의 법무법인 중 중대재해처벌법 공판 사건에서 가장 많은 무죄 판결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번 대상판결들은 단순히 예견 불가능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에 그친 것이 아닙니다. 이례적이고 예견 불가능한 사고라는 취지의 주장은 법원을 통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고, 중대재해 및 산업 안전에 대한 상당한 전문성과 고도의 역량을 바탕으로 법리와 증거에 입각하여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율촌은 대상판결들에 대하여 증거기록을 충실히 검토하고 다수의 증인신문 등을 통해 공소사실의 전제를 적극 탄핵하여 무죄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종전의 무죄 판결례와 비교해 볼 때, 대상판결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의무 위반 여부를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의 가능성 및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예견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하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특히 대상판결들은 ‘안전조치의 무의 적용 한계에 관한 법리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의 가능성, 안전조치 및 안전보건확보의 무 이행 여부의 판단 기준까지 제시하면서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므로, 향후 중대재해 사건의 수사 및 재판실무에서 반드시 참고해야 할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이번 대상판결을 통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및 현장의 안전보건조치의무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여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유해·위험요인에 관리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제반 업무를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확인되었습니다.

Related Areas

중대재해 센터

부동산 건설

Contact

정유철 변호사

02-528-5212

ycjung@yulchon.com

송민경 변호사

02-528-5797

mksong@yulchon.com

김현근 변호사

02-528-6407

hyunkeunkim@yulchon.com

정인태 변호사

02-528-5738

itjeong@yulchon.com

조상욱 변호사

02-528-5355

swcho@yulchon.com

이시원 변호사

02-528-6147

shiwonlee@yulchon.com

안범진 변호사

02-528-5919

bcan@yulchon.com

김수현 변호사

02-528-5070

soohyun@yulchon.com

정원 변호사

02-528-5283

wjung@yulchon.com

정대원 변호사

02-528-5252

dwchung@yulchon.com

허우영 변호사

02-528-5522

wyhur@yulchon.com



법무법인(유)
율촌

법무법인(유) 율촌의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율촌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